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정보 유형에 조롱·혐오정보 추가〉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96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조롱·협오정보 정의 신설 및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4
2. 조롱·협오정보에 대한 조치명령 등	11
3.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2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6. 4.

다. 회 부 일 : 2026. 6.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키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한 폭력·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훼손형 불법정보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고, 개정법상 혐오·차별 선동 정보는 열거된 차별사유와 폭력·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 조장을 중심으로 규율하

고 있어, 특정 정치적·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은 규율 대상에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희화화 표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조롱·비하 표현 등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조작된 사실의 유포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언사 또는 집단적 희화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 및 2026. 7. 7. 시행 예정 개정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음.

한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표현까지 무제한적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첫째,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둘째,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삭제·접속차단·노출제한·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넷째,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조롱·혐오정보 정의 신설 및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보를 “조롱·혐오정보”로 정의하되,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보도, 학술·예술 활동, 풍자 또는 패러디는 제외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신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조롱·혐오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의3. (생략) <u><신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①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3의4. “조롱·혐오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u>

현행	개정안
4. ~ 13. (생략) ② (생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u>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에 따라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 의 존엄성 또는 인격권을 중 대하게 침해하는 정보를 말한 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보도, 학 술·예술 활동, 풍자 또는 패 러디는 제외한다.</u> <u>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 거나 희화화하는 내용</u> <u>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 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 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u> 4.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현행	개정안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u><신설></u> 3. ~ 9. (생략) ②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u>제2호의2</u>,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등) ①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제2조제1항제3호의4에 따른 조롱·혐오정보</u>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2호의2, 제2호의3</u>-----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하와 무분별한 조롱 및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혐오 정보가 유포됨에 따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조롱·혐오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유통을 금지하며, 조롱·혐오정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전하고 성숙된 공론장으로서의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유형의 정보들은 불법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고¹⁾, 같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²⁾.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조롱·혐오정보는 특정 개인·집단 또는 일정한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조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보인데, 현행법상 불법정보에는 공공연하게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양자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항의 신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분	조문	내용
폭력·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	현행법 제44 조의7제1항 제2호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에 대하여 ① 직접적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②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조롱· 혐오정보	개정안 제2 조제1항제3 호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에 따라 반복적으로 ① 특정 개인 또는 집단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보 (단,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보도, 학술·예술 활동, 풍자 또는 패러디는 제외)

- 둘째,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에서 조롱·혐오정보를 정의하면서 행위의 유형으로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를 열거하고 있는데, 조롱·멸시·희화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입

법례는 찾아보기 힘들고³⁾, 조롱이나 희화화 등의 표현은 일상언어상 의미가 넓고 수범자의 주관적 평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의 동 조항에서 불법정보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보도, 학술·예술 활동, 풍자 또는 패러디”도 그 범위가 추상적·포괄적인 것으로 보임.

- 개정안 동 조항 동호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조롱 등의 대상이 되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법률 조문만으로는 그 사건의 범위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⁴⁾.

○ 특히, 개정안에 따른 경우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안 제44조의8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과징금, 안 제71조에 따른 형사처벌, 안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적용대상이 되는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롱·

3) 성평등가족부령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행정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 조롱·멸시·희화화의 표현을 쓰고 있으나, 법률 조문에서 해당 용어들을 사용한 예시를 찾을 수 없음.

4)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구(舊)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포괄위임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혐오정보의 범위 및 그 예외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조롱·혐오정보에 대한 조치명령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4조의8제1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제공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8제2항 및 제4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과급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8제6항 및 제7항).

-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하여 게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1조 제1항제10호의2).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u>제44조의20</u> 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u>제44조의18</u> 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u>제44조</u>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 ----- ----- ---- <u>제44조의21</u> ----- ----- ----- ----- <u>제44조의19</u> ----- ----- ----- ----- <u>제44</u>

현행	개정안
<u>의20</u>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u>제44조의20</u>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u>조의21</u>-----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44조의21</u>----- ----- ----- -----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4조의8(조롱·협오정보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조롱·협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u>

현행	개정안
	<u>하여야 한다.</u> <u>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u> <u>2. 해당 정보의 노출 제한 또는 검색·추천 제한</u> <u>3.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유통한 이용자에 대한 계정 이용제한</u> <u>4. 해당 정보를 통한 광고·후원·수익배분 등 수익화 제한</u> <u>5. 그 밖에 조롱·혐오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당 정보의 내용, 유통경위, 피해 정도, 게재·유통의 반복 여부, 공공의 이익 관련성</u>

현행	개정안
	<u>및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u> <u>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해 확산 정도,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u>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u>

현행	개정안
	<u>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협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u> <u>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제1항 각호의 조치 또는 제6항에 따른 운영정지명령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u>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 ~ 제44조의26 (생략)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신설> 11. ~ 14. (생략) ②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u>폐쇄를 명할 수 있다.</u> ⑧ <u>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기준·절차, 반복적 게재·유통의 판단 기준, 관련 매출액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운영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의 기준·기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의9 ~ 제44조의27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을 위반하여 조롱·협오정보를 고의로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u> 11.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3. (생략)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 ④ (생략)	-----.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제4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조롱·혐오정보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방미통위에게는 조치명령권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 반복적인 불이행에 대한 운영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롱·혐오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미통위에 규제 권한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미심위의 심의·시정요구⁵⁾ 및 방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

미통위의 정보 처리에 대한 거부·정지·제한 명령보다도 강화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롱·혐오정보 차단을 위한 실
효성 있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
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해 불법정
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내지는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미통위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⁶⁾.
- 그런데,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방미통위가 매출
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
시관 관리·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롱·혐오정보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불법정보
유형과는 달리 확정 판결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면서도 기타 불법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6)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롱·혐오정보를 기타 불법정보와 구분하여 가중된 규제의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기존 불법정보 규제는 민간 독립기구⁷⁾인 방미심위에 의한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기관인 방미통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일정한 처분을 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현행법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
- 그런데, 개정안은 조롱·혐오정보에 대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방미통위가 직접 일정한 조치명령,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반복적인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이트 운영중지 및 폐쇄 명령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기존의 통신심의 체계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제공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통지,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의무⁸⁾, 보고서 작성 의무⁹⁾를 부과하면서 그 수범자를 정

7) 구(舊)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로서 설치되었으며, 현(現)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형식상 여전히 민간 독립기구에 해당됨.

8)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현행법 제2조제1항제3호의2¹⁰), 동법 시행령 제2조

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9)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2에 따르면 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②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가리킴.

- 그런데 안 제44조의8은 불법정보의 일종인 조롱·혐오정보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제를 신설하면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어,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조롱·혐오정보 개념 신설 및 불법정보 추가, 그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 반복적·악의적 게재·유통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조롱·비하·멸시·희화화’ 개념의 적용 범위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수정이 필요함.
- 그 외에 방미통위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명령, 폐쇄 명령 등 조문에 대하여는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함.

나.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 ‘조롱·혐오’ 개념은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규제 대상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규제대상의 불명확성이 게재자에 대한 처벌 및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과 맞물리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위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조롱·혐오’의 판단기준이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폐쇄명령 등 극단적 제재 수단은 사법적 통제 절차를 우선 거치도록 하거나 완화된 시정조치로 변경이 필요하며, 과도한 강행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8